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4. 6. 20(목) 10:00

제25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558호
- 나. 제 출 자 : 장규권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4. 5. 28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5. 28.

2. 제안이유

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시 학교장, 학생,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·반영하도록 하고,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 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실태조사 시 학교장, 학생,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함 (안 제5조제2항 신설).
- 나.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10조 신설).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의4
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제4조, 「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」 제5조, 제7조의4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- 다. 입법예고 : 2024. 5. 29. ~ 2024. 6. 5.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이유

본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의 안전 및 실태 조사의 개선 및 통학로 공사현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여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음.

나. 주요 내용

1) 실태조사 시 학교장, 학생,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함 (안 제5조제2항 신설).

○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실태 조사할 경우 해당 구역의 실정 및 필요한 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는 학교장,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한 내실 있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2)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10조 신설).

○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을 시행주체에게 요구하고, 공사 시행을 통학시간 외에 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

다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통학로 주변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

관계법령

□ 도로교통법

[시행 2024. 1. 1.] [법률 제19357호, 2023. 4. 18., 일부개정]

제12조의4(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) ①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·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, 행정안전부,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

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또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□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3. 9. 15.] [법률 제19234호, 2023. 3. 14., 타법개정]

제3조(보행권의 보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 보장,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장애, 성별, 나이, 종교,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·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보행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.

1. 시설물의 설치, 차량의 소통 등 보행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 등에 따른 편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.

2.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폭,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 등이 유사한 지역 간에는 보행여건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3. 보행정책의 수립·추진은 보행자의 안전과 목표지점에서의 접근의 편리성과 함께 삶의 공간으로서의 쾌적성 및 미관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.

4. 보행권 증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간에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·합리적으로 조성·정비·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안전한 보행환경이 적절히 조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부과하거나 법률을 적용·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, 임산부, 어린이,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□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

[시행 2023. 12. 29.] [서울특별시조례 제9056호, 2023. 12. 29., 일부개정]

제5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23.12.29.>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해당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의 보호자 의견을 수렴한 교육시설의 장 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12.29.>

제7조의4(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)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공사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23.12.29.>

②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 통학시간이 아닌 시간에 공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23.12.29.>

[본조신설 2021.1.7.]